

판 결

사 건

[redacted] 건물

원 고

1.

[redacted]

[redacted]

2.

[redacted]

[redacted]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

[redacted]

조효동,

[redacted]

피 고

[redacted]

[redacted]

변 론 종 결

무변론

판 결 선 고

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는,

가. 원고 [redacted]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,

나. 원고 [redacted]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